

2025년 제3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25년 6월 26일(목) 오후 4시
(회의소집일 : 2025년 6월 11일)
2. 장 소 : 대학본부 2층 회의실
3. 개최기도 : 형희경 의원
4. 참석현황 (정원 12명, 재적 12명, 참석 11명)

구성위원	정원	재적	참석자명단	불참자명단
교원	3명	3명	형희경 김대용 이정미	
직원	2명	2명	홍성표	김동인
조교	1명	1명	신다빈	
학생	3명	3명	이정민 박정화 양준호	
동문	2명	2명	안윤정 이자영	
외부인사	1명	1명	정우식	
합계	12명	12명	11명	1명

- 배석자 : 김세령 교무처장, 조은미 기획팀장, 한송희(간사)

5. 안건

- 1) 예수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건.
- 2) 2025학년도 교비 추경예산(안) 자문 건.
- 3)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확인 서명자 선임 건.

6. 성원확인 및 개최선언

- 형희경 의장이 재적 12명 중 11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개최를 선언하다.

7. 전 회의록 접수

- 전 회의록 확인 후 홍성표 의원의 동의와 정우식 의원의 재청으로 참석의원 11명 중 11명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접수하기로 의결하다.

형희경	김대용	박정화
-----	-----	-----

8. 회의내용

1) 제1호 의안 : 예수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건.

- 형희경 의장이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김세령 교무처장에게 요청하다.
- 김세령 교무처장이 예수대학교 학칙 개정(안)을 아래 신규대조표로 설명하다.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제90조(부속기관) ① 우리 대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부속기관을 두고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1. - 3. 생략 <u>4. 저널편집국</u> 5. - 22.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90조(부속기관) ① 우리 대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부속기관을 두고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1. - 3. 현행 <u>4. 예수대신문사</u> 5. - 22. 현행</p> <p>② - ④ 현행</p>	<p>대학 소속 신문사의 정체성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함</p>
<p>제91조(학칙개정 절차)</p> <p>① 이 학칙의 개정은 대학구성원의 의견이 있거나 교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총장이 발의하고, 그 내용과 사유를 10일 이상 예고하여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개정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상위법령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경우에는 예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삭제 2012.9.5.></p> <p>③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정안을 사전에 공고,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행한다.</p>	<p>제91조(학칙개정 절차)</p> <p>① 현행</p> <p>② 현행</p> <p>③ <u>학칙개정은 제규정위원회의 자문, 대학평의원회 및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공포한다.</u></p>	<p>학칙 개정 절차를 명확히하고, 현행 개정절차를 반영하고자 함</p>

- 형희경 의장이 제91조 개정 목적이 학칙 개정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것인지 질의하다.
- 김세령 교무처장이 학칙 제91조 개정의 목적은 실제적인 학칙 개정 과정에서 다른 규정과의 충돌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정확한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규정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있고 대학평의원회, 교무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친 후 총장이 확정·공포하고 있으므로, 학칙 제91조의 학칙개정 절차를 실제로 명시하고자함을 설명하다.
- 정우식 부의장이 개정안 제91조 제3항의 '학칙개정은 제규정위원회의 자문, 대학평의원회 및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생략' 문구가 현행 제91조 제1항의 '이 학칙의 개정은...생략..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생략'와 내용상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며 개

형희경	김대용	박정화
-----	-----	-----

정안의 내용을 제1항에 반영하여 제1항을 수정하자는 제안과 일부 문구 표현이 현재 쓰지 않는 문구이므로 수정이 필요함을 개진하다.

- 의원들이 개정안 중 학칙 제90조는 원안대로 심의하기로 하고, 제91조에 대해서는 정우식 의원의 개진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한 후 심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다.

현행	개정안	심의 의견
<p>제91조(학칙개정 절차)</p> <p>① 이 학칙의 개정은 대학 구성원의 의견이 있거나 교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총장이 발의하고, <u>그 내용과 사유를 10일 이상 예고하여 대학평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u> 다만, 개정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상위법령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경우에는 예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삭제 2012.9.5.></p> <p>③ <u>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정안을 사전에 공고,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행한다.</u></p>	<p>제91조(학칙개정 절차)</p> <p>① 현행</p> <p>② 현행</p> <p>③ <u>학칙개정은 제규정위원회 자문, 대학평의회 및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공포한다.</u></p>	<p>제91조(학칙개정 절차)</p> <p>① 이 학칙의 개정은 대학구성원의 의견이 있거나 교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총장이 발의하고, <u>그 내용과 사유를 10일 이상 예고한 후 제규정위원회의 자문, 대학평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u> 다만, 개정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상위법령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경우에는 예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현행</p> <p>③ <u>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정안을 사전에 공고,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공포한다.</u></p>

- 이상의 심의 의견에 대해 정우식 의원의 동의와 김대용 의원의 재청으로 참석의원 11명 중 11명이 찬성하니 의장이 예수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해 위 <표>의 심의의견과 같이 심의하기로 의결하였음을 공포하다.

2) 제2호 의안 : 2025학년도 교비 추경예산(안) 자문 건.

- 형희경 의장이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조은미 기획팀장이 2025학년도 교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다.

- 다 음 -

예산 7,205,461,000원, 추경예산 8,048,695,149원, 증 843,234,149원

- 조은미 기획처 팀장이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은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라이즈사업 수주와 관련한 수입의 증가와 이에 따른 지출내역의 변경임을 대학환경개선 세부 내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다.

형희경	김대용	백정화
-----	-----	-----

- 양준호 의원은 대학환경개선 세부 내역 중 예수대학교 켈러홀 내에 위치한 학생 부속기관(학생회 등)의 이전에 대해 질의하였고 조은미 기획팀장이 해당 부속기관 이전을 포함한 구체적인 학생 관련 환경개선 사항은 추후 총학생회와 협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답변하다.
- 형희경 의장이 추경예산에 대한 의원들의 자문을 요청하니 이정민 의원의 동의와 신다빈 의원의 재청으로 참석의원 11명 중 11명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자문하기로 의결하다.

3) 제3호 의안 :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간서명자 지명 건.

- 형희경 의장이 본 회의록 간서명자의 지명을 요청하니 형희경 의원, 김대용 의원, 박정화 의원 이상 3명이 추천되니 지명하기로 하고 참석의원 11명 중 11명의 찬성으로 지명 의결하다.

9. 폐회선언

- 형희경 의장이 폐회에 대한 성안을 요청하니 이정미 의원이 동의하고 안윤정 의원이 재청하여 의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폐회를 선언하니 16시 35분이었다.

형희경	김대용	박정화
-----	-----	-----

기록 : 한송희간사 

확인 : 형희경의원 

김대용의원 

이정미의원 

홍성표의원 

신다빈의원 

이정민의원 

박정화의원 

양준호의원 

안윤정의원 

이자영의원 

정우식의원 

형희경	김대용	박정화
-----	-----	-----